

(2024학년도 제6차)

규 정 심 의 위 원 회

- 일시: 2024. 5. 30.(목), 16:10 ~
- 장소: 문화관 소통룸(402호)
- 심의 안건

연번	안건	입안부서	배석	예상시간
1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규정」 개정 건	학사관리팀	학사관리팀장	~18:00
2	「전공트랙운영규정」 개정 건			
3	「교내연구비 지원 및 관리 규정」 제정 건	교원인사팀	교원인사팀장	
4	「진로지도교수제 운영규정」 제정 건	진로취업지원센터	진로취업지원센터장	
5	「직제규정」 개정 건	기획예산팀	기획예산팀장	

○ 추후 일정

기구명	일시
교무위원회 심의	- 2024. 6. 3.(월)
법인이사회 심의	- 2024. 6. 4.(직제규정 해당)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사관리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유연한 학사 운영을 통한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		
관련근거 (관계법령)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유연한 학사 운영(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을 위해 학제간 융합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시 ‘전공선택’ 으로 인정 • 마이크로디그리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재학 중 언제 든지 신청할 수 있음 •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시 졸업 및 성적증명서에 마이크로디그리 명칭과 이수 내역을 표기		
기대효과	• 유연한 학사 운영을 통한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규정」 개정(안) 산·구조문대비표 1부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설치 및 폐지) ①마이크로디그리는 2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 2. 교무처에서 공모한 분야 3. 그 밖의 필요한 분야 ②마이크로디그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주관 부서는 교무처가 정하는 기간에 설치 심의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마이크로디그리는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④마이크로디그리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폐지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없이 폐지할 수 있다. 1. 개설 후 최근 3년간 누적 재적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2.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승인한 경우	제3조(설치 및 폐지) ① · ③(현행과 같음) ④마이크로디그리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폐지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없이 폐지할 수 있다. 1. 개설 후 최근 3년간 누적 이수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2.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승인한 경우
제6조(신청 및 이수) ①<u>마이크로디그리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교무처가 정하는 기간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u> ②마이크로디그리 이수에 필요한 취득학점은 각 주관부서에서 정하되 9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취득한 학점은 전공, 교양 또는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단서 신설> ④마이크로디그리 신청 전에 해당 교과목	제6조(신청 및 이수) ①<u>마이크로디그리 이수 신청은 재학 중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며, 신청 기한은 졸업 사정 전까지로 한다. 또한 이수 신청 취소를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 사정 전까지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u> ②(현행과 같음) ③취득한 학점은 전공, 교양 또는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단, 학제간 융합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시 전공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삭제>

현 행	개 정(안)
을 이수한 경우 마이크로디그리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이수가 인정되는 경우 <u>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을 발급하고, 각종 증명서에 해당 분야 마이크로디그리 명칭을 표시한다.</u>	⑤이수가 인정되는 경우 <u>졸업증명서에는 마이크로디그리 명칭을 성적증명서에는 마이크로디그리 명칭 및 이수 내역을 표시할 수 있다.</u>
(신설)	<u>부 칙</u> <u>이 규정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전공트랙운영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학사관리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유연한 학사 운영을 통한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		
관련근거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제5조(신청절차 및 선발인원) - 전공트랙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재학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음 • 제7조(학위수여) - 전공트랙 이수 시 졸업 및 성적증명서에 전공트랙 명칭과 이수 내역을 표기		
기대효과	• 유연한 학사 운영을 통한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해당사항 없음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첨부자료	「전공트랙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전공트랙운영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5조(신청절차 및 선발인원) <u>전공트랙 이수</u> 는 <u>별도의 신청 절차 및 트랙별 선발인원의 제한은 없으며, 해당 전공트랙에서 제시하는 교과과정을 이수하면 트랙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u>	제5조(신청절차 및 선발인원) ① <u>전공트랙 이수 신청은 재학 중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며, 신청 기한은 졸업 사정 전까지로 한다. 또한 이수 신청 취소를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 사정 전까지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u> ② <u>전공트랙별 선발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u>
제7조(학위수여) ①전공트랙을 이수하는 학생이 해당 트랙의 이수학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여타의 졸업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졸업 대상자가 된다. ②전공트랙 이수에 따라 <u>해당 트랙의 이수 내역을 학위증 및 성적표에 기재할 수 있다.</u>	제7조(학위수여) ①(현행과 같음) ②전공트랙 이수에 따라 <u>졸업증명서에는 전공트랙 명칭을 성적증명서에는 전공트랙 명칭 및 이수 내역을 표시할 수 있다.</u>
<u>(신설)</u>	<u>부 칙</u> <u>이 규정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교내연구비 지원 및 관리 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교원인사팀	관련부서	해당사항 없음
부서간 협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대학평의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전임교원의 연구 능력 향상과 학문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비 지원 -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의 본교 약학교육평가에 대한 불충족 영역에 대한 개선 사항 - 본교 규정에는 교내 및 교외 연구비에 대한 「연구비관리규정」이 있지만 교내연구비에 대한 상세 규정이 없음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는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 지침」이 있음 ※타 학교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인 연구비관리규정이 있고 교내 및 교외 관리규정을 따로 규정화 하고 있거나 각 교내, 교외 연구비 규정이 존재(약학과가 있는 대학)		
관련근거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교내연구비 목적, 종류, 정의, 신청자격 등 지원 및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기대효과	• 연구 역량이 우수한 교원을 지원하여 대학 연구 실적 제고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가. 의견수렴 유무 나. 공청회 및 공고기간(포털 및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유무 라. 의견수렴 반영사항	해당사항 없음	
첨부자료	「교내연구비 지원 및 관리 규정」(안) 1부		

「교내연구비 지원 및 관리 규정」(안)

[제정 2024.00.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석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의 연구와 학술 활동을 지원하는 교내연구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내연구비의 종류) 교내연구비는 본교 전임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하며, 교내학술연구비, 논문게재연구비, 학술 및 학회 활동비, 연구장려비로 구분한다.

제3조(교내연구비의 정의) ①교내학술연구비는 우수한 연구과제를 공개적으로 발굴, 이를 지원함으로써 연구 결과물을 우수 학술지에 게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비를 말한다.

②논문게재연구비는 본교 전임교원이 게재한 논문에 대하여 지원하는 연구비를 말한다.

③학술 및 학회 활동비는 전임교원의 연구 능력 향상과 학문적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술 및 학회 참석에 대한 출장비를 말한다.

④연구장려비는 연구 실적이 우수한 전임교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말한다.

제4조(교내연구비 신청자격) ①본교의 전임교원은 교내연구비 신청의 자격을 가진다.

②각 교내연구비 대상 선정은 사업 공고에 따라 정해지며, 신청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교내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제5조(교내연구비 신청절차) 교내연구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전임교원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다만, 학술 및 학회 활동비는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장신청서 및 출장 결과보고서로 대체한다.

제6조(교내연구비 선정) ①교내학술연구비는 교내학술연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논문게재연구비와 학술 및 학회 활동비, 연구장려비는 관리부서에서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7조(교내연구비 관리 및 집행) 교내연구비의 관리 및 집행은 「연구비관리규정」 및 각 사업별 공고에 따른다.

제8조(연구결과의 제출) ①교내학술연구비의 연구결과물은 사업 공고 기한내에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게재연구비는 신청서로 대체한다.

②최종 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본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수행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연구결과 발생한 연구장비 및 기자재 등 유형 자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④연구 결과물을 정해진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결과물 제출시부터 1년간 교내연구비지원을 제한한다.

⑤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기간 종료 시부터 5년간 교내 연구비 지원을 제한하며, 지원받은 연구비를 환수조치 한다.

제9조(관리부서) 교내연구비에 관한 업무는 교원인사팀이 관장한다.

제10조(준용) 교내연구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연구비관리규정 및 교내 학술연구위원회 등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실시한 교내연구비 지원 및 관리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진로지도교수제 운영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진로취업지원센터	관련부서	· 학과, 교원인사팀, 학사관리팀, 혁신지원팀
부서간 협의 결과	· 관련부서 회의 진행(2024 진로지도교수제 운영 회의 개최 계획(안), 진로취업지원센터-1031(2024.5.24.) · 학과 의견수렴 요청(「진로지도교수제」 운영 규정 제정에 대한 의견 요청, 진로취업지원센터-1030(2024.5.24.)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대학 생활 중 진로 설계를 실행해 취업·창업·진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원 체계 강화 - 변화하는 사회와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통합모집 및 융합전공 등으로 진로 기회를 확대하고 있음 - 이에 재학생의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운영된 평생지도교수와 구분되는 ‘진로지도교수제’를 도입, 학과(교수)의 진로지도 역량 강화를 통해 신입생 및 재학생의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위함. · 교육부 등 ‘진로교육 의무화’로 대학에서의 진로교육 체계 강화 요구에 따른 우리 대학 주요 정책과의 연계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역량교육 선진화 - 대학혁신지원사업: 교육인프라 및 질 관리, 선진적 학생지원 체계 고도화 - 지방대학활성화사업: WOW학사지원시스템 구축		
관련근거 (관계법령)	· 2024학년도 취업역량개발위원회 운영 결과보고, 진로취업지원센터-818(2024.4.22.)		
주요내용 (제·개정내용)	· 진로지도교수 운영 목적 · 진로지도교수의 자격과 의무, · 진로지도교수제에 대한 지원 및 역할 · 성과관리 및 활용 · 비밀준수		
기대효과	· [진로목표 강화 및 취업 경쟁력 강화] 진로지도교수제를 통해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자신의 진로 목표를 명확히 설정, 실무경험과 맞춤형 지도를 통한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진로지도교수제 운영」 규정에 대한 의견 요청	
	의견제출	· 재학생·교수·학과 의견: 진로지도교수에게 역할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진로지도교수는 각 학과의 총괄자임을 표기하고 모두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규정에 삽입 요청	
	의견수렴 반영사항	· 제 3조 ②항: 진로· 취업을 (총괄)하는 전임교원으로 변경 · 제 5조 ②항: (신규)학과(전공)의 전임교원은 평생지도교수로서 진로지도교수와 함께 학생들의 진로취업지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첨부자료	「진로지도교수제 운영규정」 제정(안) 1부		

진로지도교수제 운영 규정(안)

[제정 2024.00.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로지도교수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진로지도교수제 운영

제2조(관리기관) 진로지도교수제는 학생취업처에서 관장하고 학생취업처장은 그 운영을 총괄한다.

제3조(용어정의) ① 진로지도교수제는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② “진로지도교수”는 학과(전공)에서 진로·취업을 총괄하는 전임교원으로, 지속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한 교원을 학과(전공)별 1명씩 둔다.

제4조(진로지도교수의 자격과 의무) ① 진로지도교수는 각 학과(전공)마다 1명씩 두며, 학과장(전공주임)이 겸직할 수 있다. 단, 모집학생 40명 이상인 학과(전공)의 경우 1명의 진로지도교수를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진로지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진로지도교수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학과(전공) 내부회의를 거쳐 진로취업지원센터로 변경 요청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④ 진로지도교수는 재학생이 적극적으로 자기이해, 전공탐색, 진로설계에 임하도록 수시로 관찰하고 지도해야 한다.

⑤ 진로지도교수제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5조(진로지도교수제에 대한 지원) ① 학생에 대한 진로·취업지도를 활성화하고 진로지도교수제 효과를 창출하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과(전공)의 전임교원은 평생지도교수로서 진로지도교수와 함께 학생들의 진로·취업 지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진로지도교수의 역할) ① 학과별 진로지도교수는 다음과 같이 진로·취업지도를 위한 역할과 세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학과(전공) 진로설계 및 취업을 향상 계획 수립·추진
2. 진로취업교과목 운영 및 관리
3. 학과 취업을 점검 및 관리
4. 재학생 진로 및 전공설계 상담
5. 진로·취업지도 역량 개발(관련 교육 이수 등)

제7조(운영위원회) ① 진로지도교수제 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생취업처장, 기획예산팀장, 교원인사팀장, 학사관리팀장, 학생복지팀장, 학생상담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진로취업지원센터장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장은 학생취업처장으로 하고 간사는 진로취업지원센터 직원이 담당한다.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로지도교수제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진로지도교수제 운영 및 성과 평가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교과목 편성 및 운영) ①진로지도교수제 운영과 연계해 진로·취업교과목을 편성한다.

② 진로·취업교과목의 운영 및 이수 등에 관해서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성과관리 및 활용) ①진로지도교수제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관리를 위하여 진로지도교수제 운영실적을 각종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진로취업지원센터는 진로지도교수제 운영실적을 성실히 관리하고 평가 담당 부서에 증빙자료로 제출한다.

③진로지도교수의 실적은 학과평가, 교원업적평가, 우수 교원 선정/포상 추천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성과가 우수한 교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10조(비밀준수) 지도교수 및 관련 부서 직원은 학생 신상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로지도교수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 외에는 학생 신상정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 정 입 안 서			
규정명	「직제규정」		
입안형태	☐ 제 정	☒ 개 정	☐ 폐 지
소관부서	기획예산팀	관련부서	학사관리팀
부서간 협의 결과	• 학사관리팀 협의 완료		
대학평의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입안사유 (추진배경)	• 「전공설계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조정 - 학생 전공 선택권 강화를 위한 복수전공, 융합전공, 연계전공 학생자율설계전공 및 마이크로디그리/전공트랙 교육과정 운영 성과 향상 및 질관리 위한 지원체계 필요 -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단위 개편 및 통합모집 시행으로 인해 학생의 진로 및 전공 설계 지원체계 필요 -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컨트롤 타워’ 전담기구 설치		
관련근거 (관계법령)	• 「전공설계지원센터 신설」 교무위원회 논의(2024. 5. 28.) • 2024년 전공설계지원센터 추진계획(안) / 학사관리팀 내부결재		
개정(안) 주요내용	• 제21조(교무처) ‘전공설계지원센터’ 신설 • 제36조(기구표) 별표 개정		
기대효과	• 다전공제도 및 유연한 학사제도 교육 관리 체계화 및 내실화 • 학생주도 전공설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성과 극대화		
구성원 참여·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 설명회, 의견조회 등)	• 입안예고 공청회 - 일시: 2024. 5. 30.(목) 오후 2시 - 장소: 문화관 소통룸(402호) • 전자공청회 - 의견조회 기간: 2024. 5.28(화) ~ 5.30.(목) 오후 2시까지 - 접수방법: 교내 포털시스템 및 홈페이지 게시		
첨부자료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직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1조(교무처) 교무처에 교원인사팀, 학사관리팀, 교직부, 성인학습자지원팀, <센터(조직) 신설>를 둔다.	제21조(교무처) 교무처에 교원인사팀, 학사관리팀, 교직부, 성인학습자지원팀, <u>전공설계지원센터</u> 를 둔다.
제36조(기구표) 본교의 기구표는 <u>별표</u> 와 같다. (개정 2018.12.6., 2019.3.7., 2019.7.4., 2019.7.29., 2020.1.16., 2020.2.27., 2020.9.11., 2020.11.4., 2020.11.26., 2021.1.27., 2022.2.8., 2022.3.22., 2022.5.26., 2022.6.30. 2022.8.31., 2022.11.16., 2022.12.28., 2023.2.28., 2023.6.8., 2023.7.27., 2023.10.26., 2023.12.29., 2024.2.15.)	제36조(기구표) 본교의 기구표는 <u>별표</u> 와 같다. (개정 2018.12.6., 2019.3.7., 2019.7.4., 2019.7.29., 2020.1.16., 2020.2.27., 2020.9.11., 2020.11.4., 2020.11.26., 2021.1.27., 2022.2.8., 2022.3.22., 2022.5.26., 2022.6.30. 2022.8.31., 2022.11.16., 2022.12.28., 2023.2.28., 2023.6.8., 2023.7.27., 2023.10.26., 2023.12.29., 2024.2.15., <u>2024.00.00.</u>)
<u><신설></u>	<u>부 칙(학교법인우석학원- (2024. . .))</u> <u>이 규정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

현 행 (기구표)	
전주캠퍼스	
대학본부	교무처 교원인사팀, 학사관리팀, 교직부, 성인학습자지원팀, <u>(센터 신설)</u> 기획처 기획예산팀 입학처 입학관리팀 학생취업처 학생복지팀,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실 사무처 총무팀, 경리팀, 관리팀, 예비군대대
개 정(안) (기구표)	
전주캠퍼스	
대학본부	교무처 교원인사팀, 학사관리팀, 교직부, 성인학습자지원팀, <u>전공설계지원센터</u> 기획처 기획예산팀 입학처 입학관리팀 학생취업처 학생복지팀, 진로취업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사회봉사실 사무처 총무팀, 경리팀, 관리팀, 예비군대대